

第45回

서울特別市鍾路區議會 市民行政委員會會議錄

第1號

서울特別市鍾路區議會事務局

日 時：1995年3月24日(金) 10時31分

場 所：市民行政委員會室

議事日程

1. 서울特別市鍾路區手數料徵收條例中改正條例(案)
2. 서울特別市鍾路區區有財産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
3. 서울特別市鍾路區稅條例中改正條例(案)

審査된案件

1. 서울特別市鍾路區手數料徵收條例中改正條例(案)(鍾路區廳長 提出) 1面
2. 서울特別市鍾路區區有財産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鍾路區廳長 提出) 7面
3. 서울特別市鍾路區稅條例中改正條例(案)(鍾路區廳長 提出)..... 15面

(10時31分 開議)

○委員長 羅在岩 자리를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11명 중 출석위원 7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第45回 鍾路區議會 臨時會 第1次 市民行政委員會 개의를 선포합니다.

이른 아침 이렇게 나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더불어서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이렇게 참석을 해주셨고, 벌써 이렇게 봄의 중간에 지금 와 있습니다. 그런데 멀지않아서 우리도 임기 마지막 한 차례 정도 남겨놓은 오늘 임시회 우리 시민행정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간에 꼭 생각하시던 여러 가지 일들이 잘 되시기를 바라고 오늘 상정된 세 건도 순조롭게 잘 진행되도록 부탁해 마지 않습니다.

먼저 議案係長의 報告事項이 있겠습니다.

○議案係長 林星圭 議案係長 林星圭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제45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시민행정위원회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서울特別市鍾路區區有財産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이 1995년 1월 26일 종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995년 1월 26일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었고, 서울特別市鍾

路區手數料徵收條例中改正條例(案)이 1995년 2월 8일 종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995년 2월 14일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었으며, 서울特別市鍾路區稅條例中改正條例(案)이 1995년 3월 13일 종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995년 3월 17일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羅在岩 議案係長! 수고하셨습니다.

1. 서울特別市鍾路區手數料徵收條例中改正條例(案)(鍾路區廳長 提出)

(10時34分)

○委員長 羅在岩 의사일정 제1항 서울特別市鍾路區手數料徵收條例中改正條例(案)을 상정합니다.

市民奉仕室長!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市民奉仕室長 黃義振 안녕하십니까? 시민봉사실장 黃義振입니다.

서울特別市鍾路區手數料徵收條例中改正條例(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羅在岩 시민행정위원회 위원장님, 丁昌熙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서울特別市鍾路區手數料徵收條例中改正條例(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서울특별시종로구수수료징수조례를 개

정하게 된 동기는 서울특별시 시민과에서 시장 명의로 발급하던 외국인간의 국제결혼 증명 발급업무가 '95.2.1부터 각 자치구 구청장이 발급하도록 업무가 이관됨에 따른 것입니다.

외국인에 관한 업무는 당초 서울시시민과에서 취급하던 외국인간의 국제결혼증명 발급업무와 우리 구에서 처리하고 있는 국제결혼신고 업무 두 종류가 있습니다.

외국인에 대한 국제결혼 증명업무는 1956년도 미합중국대사와 서울특별시장간의 협약에 따라 서울시시민과에서 영문으로 국제결혼증명을 발급해오고 있었습니다.

외국인간의 결혼신고 업무는 섭외사법 제15조(혼인의 성립조건)과 호적법 제25조(신고의 수리·불수리 증명)을 근거로 하여 각 자치구에서 취급해 오던 중 서울시에 대한 감사원 감사시에 업무가 이원화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외국인에게 불편을 초래한다는 지적에 따라서 두 가지 업무의 처리기관을 일원화하고 외국인에 대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각 자치구에서 처리하도록 업무가 이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종전에 서울특별시수수료징수조례에 의해서 서울시 수입으로 징수하던 국제결혼 증명발급수수료 3,300원을 위 구수입으로 징수하기 위한 법적장치를 마련하고자 서울特別市鍾路區手數料徵收條例中改正條例(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업무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국제결혼 증명발급 업무는 하루에 두 건 정도 2월 1일부터 발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간의 국제결혼 신고접수 및 수리업무는 금년도에 들어와서 하루에 두 건 정도 지금 저희들이 외국인 결혼신고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자료로는 섭외사법 제15조, 호적법 제25조, 호적법시행규칙 제49조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심도있는 심의를 하시어 가결하여 주시면 본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特別市鍾路區手數料徵收條例中改正條例(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종로구수수료징수조례증개정조례(안)

제출년월일 : 1995. 2. .

제 출 자 : 종로구청장

1. 제안이유

○ 대한민국에서 외국인간 또는 외국인과 한국인간 결혼하는 경우

• 혼인신고서는 결혼당사자가 섭외사법 제15조 및 호적법 제25조에 의거 본적지 또는 주소지, 거주지 구청에 신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 국제결혼증명(영문)은 법적근거없이 "1956년도 미합중국대사와 서울특별시장간의 구두협약"에 의거 서울특별시(시민과)에서 발급하도록 이원화되었으나 '95.2.1부터 관할구청에서 혼인신고와 동시 결혼증명을 발급하도록 제도 개선시행됨에 따라,

○ 서울특별시 수수료징수조례에 의하여 시세입으로 징수하던 외국인 결혼증명발급 수수료를 우리구 세입으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는 법적근거 규정을 신설하는 것임.

2. 주요골자

○ 영문국제결혼 증명발급 및 재발급시 발급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 신설(안 별표 1)

• 영문국제결혼증명 발급 및 재발급—1매당 3,300원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혼인신고 및 증명발급

• 섭외사법 제15조(혼인의 성립요건)

• 호적법 제25조(신고의 장소)

• 호적법 시행규칙 제49조(수리, 불수리증명)

□ 수수료징수 근거규정 신설

• 국제결혼증명 발급기관변경 서울특별시 시장 지침(1995.1.14 시민 16330-43)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기 타 : 신·구조문대조표.

서울특별시종로구조례제 호

서울특별시종로구수수료징수조례증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종로구수수료징수조례중 다음과 같

이 개정한다.

〈별표〉의 제1호 제증명확인발급사항 “(43종)”을 “(44종)”으로하고, 바. 주소, 신상 및 직무에 관한 증명란(3) 내지 (7)을 (2)내지 (6)으로 하고 (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종 목	단 위	수수료액	비 고
바. 주소, 신상 및 직무에 관한 증명 (7) 영문국제결혼증명 발급 및 재발급	1 건	3,300원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음 「페이지」에 계속)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 (안)			개정 사유	
수수료의 종류 및 징수금액			수수료의 종류 및 징수금액				
1. 제증명 확인 발급사항(43종)			1. _____(44종)				
종	목	단위	수수료액	종	목	단위	수수료액
바. 주소, 신상 및 직무에 관한 증명				바. _____			
(1)	행정구역 명칭 변경증명	1건	350	(1)	행정구역 명칭 변경증명	1건	350
(2)				(2)	무적증명	"	350
(3)	무적증명		350	(3)	체적 기재사실 증명	"	350
(4)	체적 기재사실 증명	"	350	(4)	거주에 관한 증명	"	350
(5)	거주에 관한 증명	"	350	(5)	부양사실 증명	"	350
(6)	부양사실 증명	"	350	(6)	외국인 등록표(재교부)신청	"	350
(7)	외국인 등록표(재교부)신청	"	350	(7)	영문국제결혼증명 발급 및 재발급	"	3,300
• 국제결혼증명 발급기관변경 제도개신시행으로 증명발급수수료를 정수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신설							

• 국제결혼증명 발급기
관변경 제도개신시행
으로 증명발급수수료
를 징수할 수 있다
록 근거규정신설

○委員長 羅在岩 黃義振 市民奉仕室長! 수고하셨습니다.

專門委員!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蔣昭秀 專門委員 蔣昭秀입니다. 1995년 2월 8일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 제출한 서울特別市鍾路區手數料徵收條例中改正條例(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내용 중 개정이유입니다. 국제결혼인 경우에 혼인신고는 구청에, 결혼증명서 발급은 시에서 하는 현제도가 1995.2.1부터 모두 구에서 하도록 이관됨에 따라 수수료 징수 근거규정을 마련코자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영문 국제결혼 증명발급 및 재발급시 발급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련법규는 성외사법 제15조(혼인의 성립요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호적법 제2조(관장)이 되겠습니다. 호적법 제5조(구의 호적사무) 어디서 관장하느냐 거기에 대한 규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호적법 제25조(신고의 장소)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시민과에서 국제결혼 증명을 발급하던 현제도는 1956년 미국대사와 서울시장 간의 구두협약에 의거해서 변칙 운영되어 왔던 것입니다. 그것이 1995년 2월 1일부터 이를 적법하게 위 제도를 개선, 구청장이 증명을 발급토록 시행코자 함에 따른 수수료 징수 근거규정으로 적법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羅在岩 蔣昭秀 專門委員!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받겠습니다. 市民奉仕室長은 자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종전 관례대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짧게 간결하게 해서 회의진행에 도움이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하는 이 있음)

예, 朴禹信委員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朴禹信委員 朴禹信委員입니다. 하루에 두 건씩이면 연간 전수 세수가 얼마 증대되니까? 3,300원이라면서요?

○市民奉仕室長 黃義振 하루에 6,600원. 두 건 정도 처리하면.

○朴禹信委員 6,600원이면 1년이면 얼마나? 용지대는 나오는 거야? 질의 토론을 한꺼번에 종결을 하고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委員長 羅在岩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委員長!」하는 이 있음)

예, 우선 金憲中委員 질의하십시오.

○金憲中委員 내가 한마디만 하고서 끝내버리죠. 질의가 하나도 없으면 섭섭하니까 통과는 시켜줘야 되고. 그런데 이 행정이 말이죠, 1956년부터 서울시에서 하던 것을 변칙 운영하던 것을 이번에 그러니까 1995년도에 와서 비로소 바로 잡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장기간에 어떻게 여러 가지 감사도 해보고 뭐도 해보면 소위 주민을 위한 행정이 이렇게 장시일 간에 그간에 이것을 어떻게 통합을 하지 않고 방치해뒀다가 이렇게 하는가 하는 이런 의문이 많이 납니다. 이게 벌써 1956년에 어떻게 하던 그렇게 행정을 변칙적으로 하다가 1995년에 와서야 한다는 것은 이것은 어느 나라 행정이 이렇게 되는 행정이 있었습니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말씀 드립니다.

○市民奉仕室長 黃義振 저희 실무자 입장에서 담당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잘못된 부분이 아니냐 하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업무자체가 외국인을 상대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제도적으로 빨리 시정되지 않고 지금까지 그냥 관행대로 처리가 된 것이 아니냐 하는 판단입니다. 앞으로 이 업무를 철저히 추진해서 외국인들에 대한 불편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겠습니다.

(「委員長!」하는 이 있음)

○委員長 羅在岩 예, 丁昌熙委員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丁昌熙委員 丁昌熙委員입니다. 지금 현재 외국인에 대한 결혼신고나 증명원 발급이 미국인에 국한된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미국인을 제외한 모든 외국인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겁니까?

○市民奉仕室長 黃義振 모든 외국인이 되겠

습니다.

○**丁昌熙委員** 지금 영어가 만국 공통어이기는 합니까라는 지금 우리 구청에 담당공무원의 어학 실력이나 능력이 지금 어느 정도 되신 분들이 근무하시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市民奉仕室長 黃義振** 그 담당하고 있는 직원은 대학원을 수료하고 영문학과를 졸업한 아주 귀재입니다. 그래서 상당한 회화능력을 가지고 있는 직원이고 지금 2년째 외국인 결혼 신고업무와 국제결혼 증명 발급 업무를 지금 담당하고 있으면서 막힘없이 일을 하고 있을 정도의 영어 구사능력을 갖고 있는 직원입니다. 앞으로 직원들에 대한 외국어 교육 문제를 더 확대해서 많은 직원들이 컴퓨터와 회화능력만은 다 갖춰야 되겠다 하는 게 저희 실무자 입장의 생각입니다.

○**丁昌熙委員** 지금 결혼신고나 증명서 발급이 필요해서 어느 외국인이 오든지 간에 그 외국인이 필요로 하는 어학의 소통능력이 있는 공무원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거나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간단한 서식으로 해서 유인물을 보고서 증명원을 발급하는 절차를 이행하거나 하는 그러한 홍보물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것이 우리 종로구청에 준비가 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市民奉仕室長 黃義振**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세계화 계획의 일환으로 저의 사무실에 시민봉사실에도 창구표찰, 팻말이 되겠죠. 팻말 밑에 전부 '호적제신고 관련' 그러면 거기에 다시 영문으로 전부 표기를 이번에도 바꿨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결혼신고 업무와 국제결혼 증명발급업무와 관련된 안내문을 영문으로 작성을 해서 본청 국제교류과라든지 시민과에서 자문을 받아가지고 그 표기방법이라든지 표기법에 오자나 탈자라든지 정확한 표기법이 되었는지 검토를 받아서 이번에 전부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인물을 만들어 가지고 결혼신고 창구에 밑에 놓고 저희들이 외국어 구사능력이 없는 외국인들이 올 때는 그것을 저희들이 주면서 저희들이 접수 처리하고 있습니다.

○**丁昌熙委員** 유인물도 속히 구비해서 활용

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어학능력을 충분히 구비한 재원이 지금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한 가지 업무에 너무 매달리지 않느냐해서 충분히 어느 정도 돌아가면서 업무를 순환해서 해보면 관계공무원 근무규정에 준해서 업무도 다양하게 숙지할 수 있는 기회가 균등하게 돌아가야 되에도 불구하고 종로구청에 확보된 재원이 없어서 너무 오랫동안 한 가지 일에 매달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학능력이 관계되는 내용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 한정된 언어에 대해서는 수시로 카세트테이프를 제작해서라도 홍보가 되고 숙지되는 그러한 사항이 준비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보면서 질문을 마칠겠습니다.

○**市民奉仕室長 黃義振** 지금 저희 총무과에서 주관해서 매일 아침 8시 40분부터 10분씩 생활영어 방송을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직원들이 교재를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 열심히 지금 회화공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委員長 羅在岩** 수고했습니다. 담당직원 한번 볼까요? 몇 급입니까? 그 직원.

○**市民奉仕室長 黃義振** 8급입니다.

○**委員長 羅在岩** 영어만 지금 숙달이 되어 있고 다른 스페인어나 그런 것은 안되어 있고.

○**市民奉仕室長 黃義振** 영어는 물론 학교 다닐 때부터 잘하고 있는 직원이기도 하지만 정식공무원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 호적제 소속으로 있으면서 지금 호적업무에 대해서 많은 지식을 갖고 있는 직원입니다.

○**委員長 羅在岩** 지금 두세 건 때문에 한 직원이 그것에 매달리는 것이 아니고 그런 것도 그런 일도 하면서 한다는 말이죠?

○**市民奉仕室長 黃義振** 저희한테 지금 호적신고가 하루에 150건 내지 200건 정도의 호적신고를 접수하고 있습니다. 그 접수업무를 보면서 그 두 가지 업무를 겸해서 세 가지 업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당히 일 양이 많은 직원입니다.

○**委員長 羅在岩** 질의가 있으십니까?

(「委員長!」하는 이 있음)

예, **林臥龍委員**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林臥龍委員**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예

를 들어서 미국사람하고 한국사람하고 결혼
했던 말이야, 그러면 그 국적이 어떻게 되
는 겁니까? 한국에서 결혼하는 것하고 미
국 가서 결혼하는 것하고, 한국에서 결혼했
으니까 한국 국적을 취득하는 겁니까?

○市民奉仕室長 黃義振 신고는 한국에서 하
는데 그 미국인이 우리나라 국적을 갖고
있느냐 안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林臥龍委員 본인 의사에 따라서? 한국에
서 하면 한국 국적을 가져야 되는.

○市民奉仕室長 黃義振 우리나라 사람이 한
국 국적을 가지고 미국인과 결혼했을 때는
우리나라 국적을 버리든지 해야겠죠.

○林臥龍委員 여기에서 결혼했을 때는?

○市民奉仕室長 黃義振 결혼사실에 관한 것
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법적으로 조
치가 되는 겁니다. 결혼 자체가 중요한 것
이 아니고 시민권이라든지 나라마다 호적에
관한 것은 다 있습니다. 본국법에.

○委員長 羅在岩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
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은 토론하시
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토론이 없으면 토론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서울特別市鍾路區手數料徵收
條例中改正條例(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2. 서울特別市鍾路區區有財産管理條例中改正 條例(案)(鍾路區廳長 提出)

(10時50分)

○委員長 羅在岩 의사일정 제2항 서울特別
市鍾路區區有財産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을 상
정합니다.

財務局長!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財務局長 吳炳漢 안녕하십니까?

재무국장 吳炳漢입니다.

존경하는 시민행정위원회 羅在岩委員長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그동안 저희 재무행정을 이끌어 주시고
항상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여러 위원
님들을 모시고 서울特別市鍾路區區有財産管理
條例中改正條例(案)을 설명하게 된 것을 매
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개정안은 지난 94.9.29자로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 공포에 따라서 94년 11월 17
일 서울특별시부터 내무부 조례개정준칙에
의한 지침이 시달되어 우리구 자치조례를
개정하기 위하여 의회에 승인 요청하게 되
었습니다.

주요골자를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의 매각시 매각대금의 분할납부범
위와 그 기간 납부이자율을 조정하여 매각
대금을 일시에 납부하기 곤란한 주민들에게
분납할 수 있도록 주민편의에 기여코자 하
는 사항들입니다.

첫째, 공유재산의 매각대금을 10년 이내에
연 5%의 이자를 붙여 매각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할
재산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에게 매각하는 경
우와 교육청이 학교용지로 사용할 재산을
당해 교육청에 매각하는 경우, 도시재개발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해 주택개량재개발구역
안에 있는 토지를 사업시행인가 당시의 건
물소유자에게 매각시로 되어 있고

두번째는 공유재산의 매각대금을 10년 이
내에 연 8%의 이자를 붙여 분할 매각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는 국가·지방자치단체
의 공공사업에 따른 철거주민 주거용으로
매각시와 '81.4.30 이전 개인사유건물로 점유
된 200㎡ 이하의 토지, 그리고 일단의 토
지의 면적이 1,000㎡ 이하로서 81.4.30 이전
개인사유건물 바닥면적의 2배이내 토지로서
다만 다수의 건물이 밀집, 점유된 토지는
일단의 면적이 1,000㎡를 초과한 경우에 집
단화된 부분에 한하여 위 매각범위내에서
매각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건립한 아파트 등을
국가유공자에게 매각할 때이고,

세번째, 공유재산 매각대금을 5년 이내에
연 8%의 이자를 붙여 분할 매각할 재
산의 범위는 국가에게 공용 또는 공공용으

로 사용할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와 대부분은 농경지를 실경작자에게 매각시, 하천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점용허가를 받은 개인 점유토지를 매각하는 경우, 관광진흥법의 개발사업지구에 입주하는 실수요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취락개선사업에 사용될 재산을 주민에게 매각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이관업무에 제공된 재산을 이관받는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와 구청장이 매각재산을 일정기간 동안 계속 점유 사용할 경우 재산명도일과 대금납부기간 연장시 기타 공익사업 지원용 매각재산으로 일시 전액납부가 곤란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재산이 해당 되겠습니다.

기존의 10년 분할에 연 5% 내지 8%의 이자를 붙여 매각할 수 있는 포괄적 규정을 매각의 성격을 세분화하여 년부 매각의 범위와 이자율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부담을 경감하려는 내용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금번 승인 요청한 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매각대금의 분할 납부범위를 7개항에서 15개항으로 세분화하여 주민 편익을 도모코자 하오니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종로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

제출년월일 : '95. 1. .

제 출 자 : 종로구청장

1. 개정이유

○ 지방재정법시행령 개정 공포('94.9.29 대통령령 제14391호)에 따라 공유재산 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범위와 그 기간 납부이자율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골자

○ 공유재산의 매각대금을 10년이내에 연 5%의 이자를 붙여 분할 매각토록 규정함.(안 제21조 제1항)
-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한 재산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에게 매각하는 경우

- 교육청이 직접 학교용지로 사용할 재산을 당해 교육청에 매각하는 경우

- 도시재개발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해 주택개량 재개발구역안에 있는 토지를 재개발사업 시행인가 당시의 건물소유자에게 매각시

○ 공유재산 매각대금을 10년이내에 연 8%의 이자를 붙여 분할 매각토록 규정함.(안 제21조 제2항)

- 국가·지방자치단체의 공공사업에 따른 철거주민 주거용으로 매각시

- '81.4.30 이전 점유 또는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해 양성화된 건물 점유지로 200㎡이하

- 일단의 토지의 면적이 1,000㎡이하로서 1981.4.30 이전 또는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해 양성화된 건물 바닥면적의 2배이내 토지, 다만, 다수의 건물이 밀집하여 점유된 토지는 일단의 면적이 1,000㎡를 초과한 경우에도 집단화된 부분에 한하여 위 매각범위내에서 매각하는 토지

- 지방자치단체가 건립한 아파트 등을 국가유공자에게 매각시

○ 공유재산 매각대금을 5년 이내에 연 8%의 이자를 붙여 분할매각토록 규정함.(안 제21조 제3항)

- 국가가 직접 또는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재산을 국가에게 매각하는 경우

- 농경지를 대부분은 실경작자에게 매각시

- 하천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국가로부터 양여받은 경우 그 점용허가를 받은 개인 점유토지를 매각하는 경우

- 관광진흥법의 개발사업지구에 입주하는 실수요자에게 매각시

- 취락개선사업에 사용될 재산을 주민에게 매각시

- 지방자치단체 이관업무에 제공된 재산을 이관받는 자에게 매각시

- 구청장이 매각재산을 일정기간 동안

계속 점유·사용할 경우 재산명도일과
대금납부기간 연장시
—기타 공익사업 지원용 매각재산으로
일시 전액 납부가 곤란하다고 구청장
이 인정하는 재산

3. 개정조례(안) : 별 첨

4. 관련법규 : 지방재정법제83조 지방재정법시 행령제100조

5. 신·구조문 대비표 : 별 첨

서울특별시종로구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종로구유재산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종로구유재산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1조(매각대금의 분할 납부등) ①영 제
10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잡종재산 매각대금을 10
년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5%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1.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재산을 당해 지방자
치단체에게 매각할 때
2. 교육청이 직접 학교용지로 사용할 재
산을 당해 교육청에 매각할 때
3. 도시재개발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주
택개량 재개발구역안에 있는 토지중 시
장 또는 구청장이 도시재개발법의 규정
에 따라 재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유건물에 의
하여 점유·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재개
발사업 시행인가 당시의 건물 소유자에
게 매각할 때

②영 제10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잡종재산의 매각대금을 10년이내의 기간으
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8%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영 제95조제2항제8호 규정에 의하여
매각할 때
2. 제38조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

여 매각할 때

3. 지방자치단체가 건립한 아파트, 연립주
택, 공영주택 및 그 부지를 국가보훈처
장이 지정하는 국가유공자에게 매각할
때

③영 제10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잡종재산의 매각대금을 5년이내의 기간으
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8%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영 제95조제2항제2호 제6호 제10호 제
11호 제16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할
때
2. 국가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재산을 국가에게 매각할 때
3. 구청장의 필요에 의하여 매각재산을
일정기간 동안 구청장이 계속하여 점유
·사용할 목적으로 재산명도일과 매각대
금의 납부기간을 계약시에 따로 정하는
경우와 계약시에 재산명도일을 연장할
때
4. 기타 공익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매
각하는 재산으로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
기가 곤란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재
산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
한다.

②(매각대금의 분할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
21조제1항·제2항·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후 최초로 매각하는 것부터 적
용한다.

(다음 「페이지」에 계속)

현행	개정안
제21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등) ①영 제10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잡종재산 매각대금을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재산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38조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하는 재산으로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삭제 3. 영 제95조제2항제1호, 제2호, 제6호, 제8호 내지 제11호, 제13호, 제14호 및 제16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하는 재산으로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공익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매각하는 재산으로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천재·지변 기타 재해 또는 매수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불가항력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 6. 구청장의 필요에 의하여 매각재산을 일정기간 동안 구청장이 계속하여 점유·사용할 목적으로 재산 명도일과 매각대금의 납부기간을 계약시에 따로 정하는 경우와 계약시에 재산명도일을 연장하는 경우	제21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등) ①영 제10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잡종재산 매각대금을 10년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5%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1.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재산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에게 매각할 때 2. 교육청이 직접 학교용지로 사용할 재산을 당해 교육청에 매각할 때 3. 도시재개발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개량 재개발사업구역안에 있는 토지중 시장 또는 구청장이 도시재개발법의 규정에 따라 재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유건물에 의하여 점유·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재개발사업 시행인가 당시의 건물소유자에게 매각할 때 ②영 제10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잡종재산의 매각대금을 10년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8%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영 제95조제2항제8호 규정에 의하여 매각할 때 2. 제38조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할 때 3. 지방자치단체가 건립한 아파트, 연립주택, 공영주택 및 그 부지를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는 국가유공자에게 매각할 때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7. 도시재개발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개량 재개발구역안에 있는 토지중 시·도지사가 도시재개발법의 규정에 따라 재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유건물에 의하여 점유·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재개발사업 시행인가 당시의 건물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납부하는 경우 이자율은 구 일반회계의 금고업무를 취급하기 위하여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의 가계대출금리를 준용한다.	③영 제10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잡종재산의 매각대금을 5년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8%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영 제95조제2항제2호·제6호·제10호·제11호·제16호 규정에 의하여 매각할 때 2. 국가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재산을 국가에게 매각할 때 3. 구청장의 필요에 의하여 매각재산을 일정기간동안 구청장이 계속하여 점유·사용할 목적으로 재산 명도일과 매각대금의 납부기간을 계약시에 따로 정하는 경우와 계약시에 재산명도일을 연장할 때 4. 기타 공익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매각하는 재산으로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재산

○委員長 羅在岩 吳炳漢 財務局長님! 수고 하셨습니다.

專門委員!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蔣昭秀 專門委員 蔣昭秀입니다. 1995년 1월 26일 종로구청장이 제출한 서울特別市鍾路區區有財産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잡종재산의 매각대금을 일시에 납부키 곤란한 경우에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10년이내의 기간으로 분할납부할 수 있게끔 지방재정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정할 사항을 규정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세 가지 안이 되겠습니다. 매각대금의 분할납부 기간 및 이자율이 첫번째가 10년 기간에 5% 이자율로 하는 사항이고 두번째가 10년 기간에 8%이자율로 하는 사항, 세번째는 5년 기간에 8%이자율로 하는 세 가지 안이 되겠습니다.

첫번째는 조례안 제21조제1항에 규정된 사항인데 10년 기간에 5%의 이자율을 적용하는 해당 사항이 되겠습니다. 즉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매각하는 경우 학교용지로 교육청에 매각하는 재산, 주택개량 재개발사

업시 건물주에게 매각하는 사항은 10년 기간에 5% 이자율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고, 두번째 10년 기간에 8% 이자율을 적용하는 사항은 철거주민에게 주거용으로 매각하는 경우와 기타 국가유공자 등에게 매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번째는 조례안 제 21조제3항 5년 기간에 8% 이자율을 적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사항은 국가에게 매각한다거나 농경지를 점유 허가받은 실경작자에게 매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관련법규입니다. 지방재정법시행령 제 100조(대금의 연납)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9월 29일 개정된 사항입니다. 그 내용은 잡종재산의 매각대금과 교환차금은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해서 연 5% 내지 8%의 이자를 붙여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납부방법 세 가지의 수혜폭이 상당한 차이가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즉 주택개량 재개발사업시에 건물주에게 매각하는 매각시에는 10년 기간에 5% 이자율을 적용하고 철거주민 주거용지 매각시에는 10년 기간에 8% 이자율을 적용하도록 현 조례(안)이 되어 있습니다. 이 수혜폭이 다르기 때문에 적정하게 해당사항이 규정되었는지에 대한 검토는 일차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타 사항은 적법한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심의에 참고가 될 관련법규를 적시했는데 즉 재개발사업이라는 것은 어떤 사항이나, 그 다음에 지방재정법시행령 철거주민에게 매각할 재산은 어떤 사항이나 이런 사항을 적시했습니다.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羅在岩 專門委員!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하는 이 있음)

네. 金憲中委員! 질의하세요.

○金憲中委員 金憲中委員입니다. 사유지로 되어 있으면서 지금 한 20년 시민아파트가 점유한 지역 이것이 각 동마다 시민아파트에 대해서는 현재 사용료도 부과하지 않고

있지요?

○財務局長 吳炳漢 네. 그렇습니다.

○金憲中委員 그런데 그걸 봐주는 걸로 알고, 없는 사람들이니까 우리 구의원이나 누구도 시민아파트는 물이 줄줄 새고 빨리 개선을 해야 된다 이래서 주민 전체가 동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누구 하나가 사용료를 받는다 안 받는다 하는 시비는 없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주거환경개선으로 서울시에서 20일날 심의를 하다가 연기가 됐는데 이것이 지구지정이 된다면은 이 시민아파트 하다못해 점유하고 있는 자리 그 자리라도 어떠한 형식을 갖춰서 불하를 해야지요. 불하를 않고 그냥 집을 지어서 분양을 할거나 사전에 이런 연구를 해보셨습니까?

○財務局長 吳炳漢 죄송합니다만 제가 주거환경개선 특별법에 대해서는 소관 사항이 아니라 검토를 못 해봤습니다. 그래서 특별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을 관계 局長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金憲中委員 부언해서 말씀드리면 시민아파트 주거환경개선 예정지가 몇 천 평씩 되는데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몇 천 평을 어려운 사람들에게 10년에 8%를 한다든지 5년에 8% 이런 식으로 할지라도 그 평수가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러면 20평 아파트를 짓는다 해서 거기에 총체적으로 2천 평이면 2천 평을 전부 나눠서 지분별로 분양을 할 경우는 다른 데 가서 아파트를 사는 것보다도 더 비싼 것 같아요. 제가 연구를 해보니까 다른 데 가서 5,000만원, 6,000만원 이렇게 주면 매수할 수가 있는데 혹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주택과에서 협의가 있다든가 할 때에는 편의증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십사 하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財務局長 吳炳漢 네. 알겠습니다.

○委員長 羅在岩 金憲中委員님! 수고하셨습니다.

(「委員長!」하는 이 있음)

다음은 孫光一委員! 질의하세요.

○孫光一委員 孫光一委員입니다. 지금 우리 종로구에는 구유재산이 학교부지로 쓸 수 있다는 이야기가 있고 그 다음에 재개발이

라든가 아파트, 재건축이라든가 그런 부지가 어디어디에 얼마나 있는지 그것을 명백하게 해주셨으면 좋겠고, 학교부지가 지금 없어 가지고 종로는 상당히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기고등학교라든지 모든 좋은 명문학교가 강남으로 갔기 때문에 우리 종로는 이제 노년화 현상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러한 학교부지가 될 수 있는 데가 있으면 앞으로 우리 종로구에서 유치를 해서 좋은 학교를 더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財務局長하고 담당공무원한테 학교부지로 쓸 수 있는 구유재산이 얼마나 있는가 하고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財務局長 吳炳漢 저희들이 구유재산에서 학교용지로 쓸만한 용지는 없습니다. 다만 도시계획법에 의해 가지고 학교용지로 지정이 돼서 그렇게 구청에서 관리하는 토지가 있는지 여부는 한번 알아 보겠습니다만 대개 도시계획으로는 우선 지난 '81년인가 정해 가지고 사유지인지 국유지인지 일괄적으로 정해놓은 게 있습니다. 그 이외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사유지같은 경우에는 교육위원회에서 예산으로 구매를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孫光一委員 왜 제가 물었느냐 하면 우리가 동덕여고 정도는 과거에 학교부지로 묶어 달라고 그만큼 동부지역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교육청의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고 구청 자체에서도 학교부지를 풀어서 이번에 아파트로 쓴다든가 종로구민회관을 짓게끔 되어 있는데 동부지역 쪽에는 뿐만 아니라 이쪽 종로에 사실은 그런 학교가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학교가 떠나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학교 자리는 묶어놨다가 우리가 학교로 다시 활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학교로 묶은 땅은 팔지 않고 우리가 그 주변에 앞으로 상가겸 복합건물을 지었을 경우에는 인구가 젊은 사람이 유치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종로는 노년화 현상이 나오니까 행정을 하시는 분들은 과거에 종로에 명문학교가 있을 때 그러한 역사를 되새기면서 종로에 행정하시는 분들이 앞으로를 위해서 그러한 행정을 해주셨으면 하고

바라는 바입니다.

○財務局長 吳炳漢 참고하겠습니다.

(「委員長!」하는 이 있음)

○委員長 羅在岩 네. 朴禹信委員! 질의하세요.

○朴禹信委員 서울特別市鍾路區區有財産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 제21조, 1항, 2항, 3항이 5%, 8% 되어 있는 근거가 왜 균등하게 하지 않고 5년에 8%, 10년에 5%를 하는 그런 법적인 근거가 있습니까? 무엇때문에 다른 자치단체에 매각할 때에는 10년 이내 5%, 또 재개발이나 주거환경같은 데는 5% 이자를 붙여서 하는데 철거주민한테 매각하는 건 8% 21조 2항에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 근거가 있습니까? 왜 그렇게 하는 겁니까?

○財務局長 吳炳漢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5년 이내 8% 일률적으로 되어 있던 것을 '94년 9월달에 내무부에서 지방재정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그걸 시민들이 좀더 혜택을 많이 받도록 항목을 정해서 15개항으로 세분화하는 과정에서 조례 개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박위원님이 지적하신 어떤 곳은 5%의 이자율을 적용하고 어떤 곳은 8%를 적용하느냐 하셨는데 당초 이런 재개발이나 재개발주택개발이나 철거용 주거용지나 마찬가지로 8%였는데 서울시에서 우리 서울시는 기존 구시가지이기 때문에 주택개발 개발을 좀더 장려하자 하는 의미에서 이 항목만 10년 기간에 5%로 이율을 적게 하는데 목적을 둔 것입니다. 서울시에서는 조금 더 우리 시민들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朴禹信委員 상위법에 어떤 근거가 적용을 했는가 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종전에 매각할 적에 일시불로 내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것을 10년이나 5년하는 것은 대단히 바람직한 그런 개정조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단 이자율을 왜 5%, 8%를 붙이는 상위법, 다시 말해서 그런 근거법이 있는가 하는 것을 질의한 겁니다.

○財務局長 吳炳漢 지방재정법 100조에 보면 대금납부 연납에 대해서 규정이 되어 있는데 매각대금은 원칙은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일시에 전

액을 납부하기 어려운 사람에 한해서 5% 내지 20%까지 이자를 붙여서 편의를 봐줘라 하는 내용입니다. 그걸 근거로 해가지고 시행령에서는 10년내 기간에 5%, 8%이자까지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던 것을 이번에 개정하면서 조례에서 세분화한 것입니다.

(「委員長!」하는 이 있음)

○委員長 羅在岩 네. 丁昌熙委員! 질의하세요.

○丁昌熙委員 丁昌熙委員입니다. 지금 시유지나 국공유지도 이러한 조례가 매각할 적에 이러한 기간이 이자율이 부과되는 것이 이번 같이 공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구유재산만 이런 규정으로 붙이는 겁니까?

○財務局長 吳炳漢 시유지를 포함해서 합니다. 그런데 시유지는 시에서 시조례로 정하기 때문에 저희들 거와 마찬가지로 이율이 동일하게 적용된 걸로 압니다.

○丁昌熙委員 지금 이것이 소유권 명의이전은 어떤 식으로 됩니까? 매각이 될 때 분할납부할 때에는 납부가 끝나야 명의이전이 넘어갑니까? 계약을 체결하면 명의이전이 넘어갑니까?

○財務局長 吳炳漢 대금이 납부가 되어야 명의이전이 가능하고 다만 예외적으로 채권 확보가 확실히 될 때에는 명의이전을 해주도록 예외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丁昌熙委員 다른 거는 이상이 없어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매각하는 경우나 학교용지를 교육청에 매각하는 경우는 상관이 없습니다만 주택개량 재개발사업시 건물주에게 매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재개발사업을 시행한 이후에는 일단의 필지를 한 필지로 해서 그 필지 중에 소유지분을 해서 아파트를 분양하거나 소유권을 이전하기 위해서는 기한을 10년 줬다 하더라도 최소한도 분양시점에는 토지가 소유권이 확보가 돼 가지고 소유권이 이전이 돼야지 됩니다. 분양받는 사람들에게 실질적으로 10년이란 기한이 불필요합니다. 10년 동안 재개발하는 사업 시행기간이, 공사기간이 10년 걸린다는 데는 없어요. 최소한도 3,4년이면 종결됩니다. 그러면 어쨌든지 간에 소유권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잔금을 다 치워야만 소유권

이 넘어간다고 하면 기한이 10년인 거는 사실상 있으나마나 한겁니다. 단 이자율만 5%에 적용하기 위해서 윗쪽 1항에다가 붙인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財務局長 吳炳漢 옳으신 말씀인데 원칙은 대금납부는 전액 납부가 원칙인데 예외규정은 어려운 사람들에게 10년간 분할납부를 해준거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잔액이 완납될 때 소유권 이전이 가능하지만 채권확보가 확실시되는 것은 판정을 해서 소유권이전을 해주도록 되어 있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특별한 애로가 재개발사업과 다르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丁昌熙委員 예를 들어서 재개발사업에 시행자나 거기 조합원에게 분양해줄 경우 채권확보가 확실시되면 명의이전을 해주고 채권을 추후에 보존한다고 하면 그 아파트에 일부 시유지나 구유지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 신규 취득자한테 그 채권이 넘어간다는 겁니까?

○財務局長 吳炳漢 그러니까 본인이 매입하려는 토지에 대해서 그걸 저당권을 설정하면은 당해 토지에 대해서도 명의이전을 해줍니다.

○丁昌熙委員 당해 토지라고 하면 문제가 있지요. 타물건에 대한 저당권이라든가 채권 확보가 가능하다면 국장님 말씀이 이해가고 연결이 됩니까라는……

○財務局長 吳炳漢 그러니까 매수자의 물건이 저당권만 설정되면 가능합니다.

○丁昌熙委員 또 한 가지 제21조2항에 보면 국가유공자에게 매각하는 경우라고 되어 있는데 국가유공자도 등급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등급까지가 제2항에 해당되고 어느 유공자가 해당이 안되는지 그렇지 않으면 국가유공자라고 되어 있는 모든 분들에 대해서는 등급에 따라 매각조건이 가능한지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財務局長 吳炳漢 확실한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국가보훈처나 소관 중앙부처에서 국가유공자에 대한 증빙을 발급해주고 있습니다. 그 증명을 발급하면 그걸로 갈음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1조 2항 3호에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는 국가유공자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이게 특별한 혜택은 없습니다. 감정률이 5%나 8%나 그거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가 건립하는 아파트나 건립에 따른 부지를 매각할 때에는 처장이 지정한 자에 한해서는 혜택을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丁昌熙委員** 그러니까 국가유공자가 점유해서 쓰고 있는 구유지에 대해서 매수 요청이 있을 경우나 그렇지 않으면 일단의 국가유공자가 어떤 집단으로 해서 구유채산을 매각할 요청이 있을 경우에 해당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財務局長 吳炳漢** 사실 이 조항은 우리 구에는 아직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서울이나 우리 도시개발공사에서 건립한 아파트, 연립주택, 공영주택을 지어 가지고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는 유공자에게 분양할 때 이런 혜택을 주겠다는 겁니다.

○**丁昌熙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羅在岩**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질의 종결을 宣布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세요.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丁昌熙委員!** 발언하세요.

○**丁昌熙委員** 한 5분간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중습니다」하는 이 많음)

○**委員長 羅在岩** 5분간 정회를 하자는 **丁昌熙委員**의 의사진행 발언이 있었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會議中止 11時25分)

(繼續開議 11時35分)

○**委員長 羅在岩** 자리를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續開를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세요.

(「委員長!」하는 이 있음)

네. **丁昌熙委員!** 토론하세요.

○**丁昌熙委員** 먼저번에 획일적으로 운영기간에 년리 8% 이자로 되어 있던 것을 사안별로 해서 해당사항의 특성에 따라서 10

년 기간 5% 이자의 적용이나 10년 기간 8% 이자 적용으로 이렇게 세분화된 사항을 보다 과학적으로 좀 세분화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정없이 원안 가결로 동의안을 제출합니다.

○**委員長 羅在岩**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토론 종결을 宣布합니다.

表決하겠습니다. 서울特別市鍾路區區有財産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은 원안대로 議決하고자 하는데 異議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3. 서울特別市鍾路區稅條例中改正條例(案)(鍾路區廳長 提出)

(11時37分)

○**委員長 羅在岩** 의사일정 제3항 서울特別市鍾路區稅條例中改正條例(案)을 상정합니다.

財務局長!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財務局長 吳炳漢** 재무국장 **吳炳漢**입니다. 존경하는 **羅在岩** 委員長님 그리고 위원님들! 저희 재무행정을 위하여 언제나 헌신적으로 애써주시는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선 종로구세조례 중 일부 조례의 개정(안)을 제안설명드리게 된 동기는 현재 시행 중인 지방세 조례 내용 중 '94. 12 지방세법 개정과 관련하여 적용이 모호한 규정을 명백히 하고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종로구세조례 개정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7조 납기한의 연장에서 종전의 납기한의 연장 규정은 납기를 정하여 부과 고지되는 세목에 한하여 연장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신고 납부하는 취득세, 주민세 등의 납부기한은 해석이 불분명하여 적용할 수 없는 것으로 운영되었기에 “납기한의 연장”을 “기한의 연장”으로 용어를 변경해서 지방세의 모든 신고, 납부, 통지, 제출 등의 기한연장이 가능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리고 제17조 비과세 및 감면 적용자 신고, 제29조 토지에 대한 신고, 제33조 비과세 및 감면조항에서는 종전에는 비과세 및 감면시 과세기관에

신고하는 규정을 동일조문으로 통합 규정하고 있었으나 금번 지방세 감면에 관한 신청은 지방세법에서 별도로 규정함에 따라 이를 29조, 33조는 삭제하기로 17조 내용에 비과세 및 감면이란 용어를 감면을 삭제해서 ‘비과세 적용자 신고’ 이렇게 내용이 개정된 것입니다. 그 다음 제19조 구관사업 등 건축물에 관한 조항과 제28조 구관사업 등의 토지에 관한 조항에서는 이제 19조는 구관사업 등의 건축물 지방세법에 명시된 농협, 수협, 축협 및 임업, 제28조는 구관사업 등의 토지 이렇게 해서 두 가지로 하나는 토지, 하나는 건축으로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구관사업 등의 부동산으로 해서 두 개 조항을 통합 운영하는 것으로 개정토록 한 것입니다. 기타 제22조에 지방자치단체 감면지역과 제24조 중개에 대한 신고, 제31조 납기일 등에 대해서는 지방세법 관련규정의 개정 또는 관련규정에 별도로 규정하고 있어서 이것은 삭제한 것입니다.

간략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지금까지의 적용이 모호한 조례 규정을 명백히 해서 그러한 미비점을 보완하여 우리 종로구민에게 구세에 대한 수혜적 조치이므로 의원님께서는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지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조례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바라오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종로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제출년월일 : 1995. 3. .

제 출 자 : 종로구청장

1. 제안이유

지방세법 및 지방세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자치구세조례 중 개정되어야 할 사항이 발췌 시달되어 서울특별시종로구세조례 중 일부를 개정코자 함.

2. 주요골자

가. 지방세법 및 동법시행령의 개정에 따

라 법조항 및 문구의 일부 변경(안 제7조, 안 제17조, 안 제19조제1,2항 안 제22조, 안 제29조제2항, 안 제33조)

나. 건설기계의 명칭 및 종류 취득년월일, 등록번호 등록년월일, 용도 사항 삭제(안 제17조제5호)

다. 건설기계에 대한 신고의무 사항 삭제(안 제24조)

라. 구관사업 등 토지에 대한 경감사항 삭제(안 제28조)

마. 재산할의 납세의무자의 자진신고 납부 사항 삭제(안 제31조제1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세법

나. 제정조건 : 내무부세정 13430-343(94.12.22)호 및 서울특별시세정 13400-1281(94.12.22)호 및 세정 13400-105(95.2.15)에 의한 “자치구조례 중 개정조례” 시달.

다. 예산조치 : 별도의 예산조치 필요없음.

라. 기타사항 : 신·구조문 대비표(별첨)

서울특별시종로구세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종로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종로구세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중“(납기한의 연장)”을 “(천재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으로 하고 동조 제1항중 “납부 또는 납입기한의”를 “기한의”로 하며, “납기한”을 “기한이 만료되기 전”으로 한다.

동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한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한이 만료된 날의 익일부터 납세의무자 및 특별징수의무자에 대하여 3개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

동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한의 연장을 받은 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또 다시 기한의 연장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그 연장을 필요로 하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연장된 기한내에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구청장이 그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1회에 한하여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다시 연장할 수 있다.

동조 제5항 중 “납기한”을 “신고납부기한의”로 하고, “가산금은 그 연장 기간이 만료된 때부터 징수한다”를 “가산세는 그 연장 기한이 만료된 때부터 적용한다”로 한다.

제17조 중“(비과세 및 감면적용자의 신고사항)”을 “(비과세 적용자 신고사항)”으로 하고 “법제184조, 제184조의2 및 제184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를 비과세 또는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을 법 제18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를 비과세받고자 하는 자는”으로 하며,

동조 제5호를 삭제하고, 동조 제6호, 제7호를 동조 제5호, 제6호로 한다.

제1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구관사업등 부동산에 대한경감) ①법 제266조제3항 및 제4항에서 “구관사업용등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및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라 함은 다음의 것을 말한다.

1. 구매, 판매 및 그 부속사업용 부동산

2. 보관, 가공무역 및 부속사업용 부동산
3. 생산 및 검사사업용 부동산
4. 농어민 교육시설용 부동산

②법 제26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구관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경감률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제22조 중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지역”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으로 한다.

제24조를 삭제한다.

제28조를 삭제한다.

제29조제2항중 “법 제234조의12 내지 제234조의 14의”를 “법제234조의12의”로 하고, “비과세 또는 감면”을 “비과세”로 한다.

제31조를 삭제한다.

제33조중“(비과세 및 감면적용자의 신고사항)”을 “(비과세적용자의 신고사항)”으로 하고 “비과세 또는 감면”을 “비과세”로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95.1.1일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구세조례중개정(안)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7조(납기한의연장) ①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가 지방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u>납부 또는 납입기한의</u> 연장을 받고자하는 때에는 지방세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서를 <u>납기한</u> 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천재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 …………… …………… <u>기한의</u> …………… …………… …………… …………… <u>기한이 만료되기 전</u> …………… ……………

현행	개정안
②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u>납기한의</u>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u>납기한의</u> 익일부터 납세의무자 및 특별징수의무자에 대하여 3개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u>그 납부 또는 납입기한</u>을 연장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u>납기한의</u> 연장을 받은 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또다시 <u>납기한의</u> 연장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그 연장을 필요로 하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u>납기한의 연장 기한내에</u>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구청장이 그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1회에 한하여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u>납기한을</u> 연장할 수 있다. ④(생략) ⑤<u>납기한의</u> 연장이 결정되었을 경우의 당해 <u>가산금은 그 연장기간이 만료된 때부터</u> 징수한다. 제17조(비과세 및 감면적용자의 신고사항) <u>법제184조, 제184조의2 및 제184조의3의</u> <u>규정에 의하여 재산세를 비과세 또는</u> <u>감면받고자 하는 자는</u> 다음 각호에 계 기하는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과세 기준일까지 구청장에게 제 출하여야 한다. 1.~4. (생략) 5. 건설기계의 명칭 및 종류, 취득년월 일, 등록번호, 등록년월일, 용도	②<u>기한의</u> <u>기한이 만료된 날의</u>..... 연장할 수 있다. ③<u>기한의</u>..... <u>기한의</u>..... 연장된 <u>기한내에</u>..... <u>다시</u> ④(현행과 같음) ⑤신고납부 기한의..... <u>가산세는 그 연장기한이 만료된</u> <u>때부터</u> 적용한다. 제17조(비과세 적용자신고사항) 법제184조의 <u>규정에 의하여 재산세를 비과세 받고자</u> <u>하는 자는</u>..... 1.~4. (현행과 같음) <삭 제>

현행	개정안
6. 선박의 선질, 명칭, 정계장, 구조, 용도, 총톤수 또는 적재량 7. 항공기의 종류, 이륙중량, 적재능력, 항공기의 형식, 용도 제19조(구관사업등 건축물에 대한 경감) ①법제184조의3제2항제6호에서 “구관사업등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사업에 직접사용하는 건축물”이라함은 다음의 것을 말한다. 1. 구매, 판매 및 그 부속사업용 건축물 2. 보관, 가공 무역 및 부속사업용 건축물 3. 생산 및 검사사업용 건축물 4. 농어민 교육시설용 건축물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 건축물에 대한 경감률은 100분의75로 한다. 제22조(중과 대상지역) 법제188조 제1항제2호제3목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지역”이라함은 상업지역 및 녹지지역을 말한다. 제24조(중기에 대한 신고의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납세의무자는 건설기계의 명칭 및 종류, 취득년월일, 등록번호, 등록년월일, 용도, 취득가격, 과세사실, 발생년월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0일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현행 제6호와 같음) 6. (현행 제7호와 같음) 제19조(구관사업등 부동산에 대한 경감) ①법제266조제3항 및 제4항에서 “구관사업등 당해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및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라함은 다음의 것을 말한다. 1.부동산 2.부동산 3.부동산 4.부동산 ②법제26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구관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경감률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제22조(중과 대상지역) 법제188조제1항제2호제3목의 규정에 의한 “당해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라 〈삭 제〉

현행	개정안
1. 건설 기계를 취득한 때 2. 건설기계를 매도하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된 때 3. 국외에서 사용하던 건설기계를 국내에서 사용하게 된 때 4. 비과세 건설기계가 과세건설기계로 된 때 5. 과세건설기계가 비과세 건설기계로 된 때 제28조(구판사업등 토지에 대한 경감) 법 제234조의14 제2항제6호에서 구판사업등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라 함은 다음의 것을 말한다. 1. 구매·판매 및 그 부속사업용 토지 2. 보관·가공·무역 및 그 부속사업용 토지 3. 생산 및 검사사업용 토지 4. 농어민 교육시설용 토지 제29조(토지에 대한 신고의무) ①(생략) ②법제234조의12 내지 제234조의14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토지세를 <u>비과세</u> 또는 <u>감면</u>받고자 하는 자는 토지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용도, 기타 <u>비과세</u> 또는 <u>감면</u> 대상토지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과세 기분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1조(납기) ①재산할의 납세의무자는 법 제2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	〈삭 제〉 제29조(토지에 대한 신고의무) ①(현행과 같음) ②법제234조의12의<u>비과세</u> <u>비과세</u> 〈삭 제〉

현행	개정안
을 매년 7월 1일부터 7월 10일까지 구청장에게 자진신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33조(비과세 및 감면적용자의 신고사항) 법제24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세 를 비과세 또는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에 정하는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납기 개시일 10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1.~6. (생략) (신설)	제33조(비과세 적용자의 신고사항)비과세..... 1.~6. (현행과 같음)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95.1.1일부터 시행 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 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 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委員長 羅在岩 吳炳漢 財務局長! 수고하
셨습니다.

다음은 蔣昭秀 專門委員! 검토보고가 있
겠습니다.

○專門委員 蔣昭秀 專門委員 蔣昭秀입니다.
'95년 3월 13일 종로구청장이 제출한 서울
特別市鍾路區稅條例中改正條例(案)에 대한 검
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내용의 개정 배경입니다. '94년
12월 22일 모법인 지방세법이 일부 개정됨
에 따른 개정사항이 되겠습니다. 검토보고
사항에 여러 가지 세법 개정사항이 복잡하
기 때문에 그 다음 장에 도표로 그려냈습
니다. 도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크게 봐서 네 가
지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7조 관련사항, 제
17조 관련사항, 제19조 관련사항 그 다음에
제31조 관련사항 그렇게 크게 네 가지 사

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제7조 관련사항은 본 26조
2항이 개정이 돼서 조의 제목이 바뀌고
내용에 지금까지는 세금고지 행위에 대해서
만 지칭하던 표현을 앞으로는 세금과 관련
된 각종 신고, 신청, 청구행위까지 포함해
서 법개정이 됐기 때문에 이 개정안에 따
른 통칭하는 용어로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
서 납부 또는 납입기한의 결재사항, 개정안
기한의 연장 이래서 통괄적으로 하도록 되
어 있습니다. 그 다음 납기한 이전 세금만
말하기 때문에 신청행위 등 이런 사항은
기한이 만료되기 전 이런 식으로 통칭해서
표현토록 자구수정된 사항이 제7조 관련사
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제17조하고 제24
조는 중기관리법에 의한 중기에 대한 재산
세 관련 신고 및 등록 연기사항에 관한
규정인데 이 사항은 법개정에서 재산세에서

삭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등록세에서 지금 토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관련사항을 삭제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 제19조 또 28조 구관사업에 관련된 건축물 또는 토지에 대해서 경감 규정을 두고 있었는데 개정안에서는 이 두 항을 통합해서 건축물, 토지를 부동산으로 통칭해서 한 조항으로 개정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제31조 남기는 법에서 이미 남기 규정을 정했기 때문에 조례에서 정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조례 사항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관련법규로는 이 조례 사항을 이행하기 쉽게끔 천재 등으로 인한 감면규정, 그 다음에 기한의 연장 관계규정, 그 다음에 납세지 관계, 그 다음에 구관사업에 관련된 사항, 그 다음에 납기를 아까 삭제했는데 법에서 새로 신설된 제250조 규정 이렇게 참고적으로 나열을 해놨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상위법 개정에 따른 관련 조례규정의 개정내용으로 구관사업 경감규정 중 증건축물, 토지에 대하여 각각 규정하던 것을 부동산으로 통합해서 간결한 규정체계를 도모하는 등 합리적 개정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羅在岩 蔣昭秀 專門委員!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요령은 종전과 같습니다.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하는 이 있음)

예, 丁昌熙委員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丁昌熙委員 지금 경감률이 종전에 100분의 75, 부과율이 100분의 25였었는데 100분의 50으로 이번에 개정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財務局長 吳炳漢 財務局長이 丁昌熙委員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종전에 100분의 75에서 100분의 50으로 감면된 것은 지방세법 제266조의 3항 규정에 의해서 모든 세금 감면은 100분의 50으로 감면된다고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법의 통일성 차원에서 개정이 된 것입니다.

○丁昌熙委員 이 경우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에 말이죠, 100분의 50을 초과해서 정할 수 있는 권한위임 사항이 같이 수반되어서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100분의 50으로 못을 박아진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財務局長 吳炳漢 財務局長이 답변드리겠습니다. 丁委員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나 다만 일정 서울시면 서울시 일정 지역내에서 통일성을 형평성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시에서 어떤 준칙으로 내려준 사항을 적용한 것입니다.

○丁昌熙委員 지금 구관사업을 한 예로 들어서 농수산물 직거래에 의해서 농어민에 대한 판로개척을 위해서 그런 유통시설이 특히나 시장의 기능이 열악한 평창동, 부암동지역 같은 데는 부분적으로 그러한 제3섹터 사업이 공사나 공단의 또 그렇지 않으면 공익법인이 구성이 되어 가지고 그런 행위가 이루어져야만 농어민에 대한 보호 측면과 또 시장기능이 없는 지역의 주민들에 대한 편의가 맞물려서 돌아갈 수 있는 사항이 지금 100분의 75인 상황에 있어서도 실현이 불가능하고 어려운 점이 많았는데 100분의 50이 될 경우에는 그러한 일이 더 없어지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을 생각해 보면서 지역적으로 동대문시장이라든가 이런 대형시장에 가까이 인접해있는 지역은 이러한 사업이 크게 장려할 사항이 못된다고 하더라도 시장기능이 취약한 데는 그런 기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財務局長 吳炳漢 丁昌熙委員님 질의에 대해서 財務局長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丁委員님 생각에 저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구관장이 많이 개설이 되어서 지역주민들이 산지의 채소를 싼 값으로 먹을 수 있는 방법이 있겠습니까마는 그래서 우리가 농업중앙회 구관장뿐만 아니라 저희 구청에서도 2개 소의 직관장을 개설해서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서울감면은 아까 설명을 드려서 생략하고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委員長 羅在岩 질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

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은 토론하십시오.

(「委員長!」하는 이 있음)

예, 丁昌熙委員 말씀하십시오.

○丁昌熙委員 토론시간이지만 질의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吳局長님! 천재지변 중에서 화재를 당한 사람이 천재지변에 들어갑니까? 또 화재가 해당이 된다고 치면 몇% 정도 손실이 되었을 적에 천재지변에 준용한다고 되어 있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財務局長 吳炳漢 財務局長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확실한지 모르겠지만 천재지변의 범주에 화재는 어떤 규모의 화재는 천재지변에 들어가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 지역적인 화재는 천재지변에 해당이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稅務1課長 尹煥老 번개가 쳐가지고서 되었다든가 무슨 지진이 있었던가 해서 화재가 났다면 천재지변에 들어가지만 평상시의 화재사건을 천재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財務局長 吳炳漢 소방서나 경찰 제통에서 화인을 조사하기 때문에 어떤 특정사항이 있을 때는 천재지변에 해당이 안되고 다만 산불이나 대단위 지역에 발생하는 화재에 대해서는. 제가 확실한 말씀은 못드리겠습니다.

○丁昌熙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하는 이 있음)

○委員長 羅在岩 예, 金憲中委員 말씀하십시오.

○金憲中委員 鍾路區稅條例中改正條例(案)은 지금까지 애매모호한 조례를 현실적인 조례로 개정하는 것으로 행정적으로 보나 주민 편의위주에 대한 진일보적인 개정으로 판단되므로 원안 가결함이 좋다고 봅니다.

(「재청입니다」하는 이 많음)

(「삼청입니다」하는 이 많음)

○委員長 羅在岩 그러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서울特別市鍾路區稅條例中改正條例(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委員 여러분! 정말 바쁘신데 이렇게 나오셔서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았습니다. 吳炳漢 財務局長님! 수고 많았습니다. 심사 검토보고를 해주신 우리 蔣昭秀 專門委員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심사보고서는 위원장과 간사가 협의해서 작성,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第45回 鍾路區議會 臨時會 第1次 市民行政委員會 산회를 선포합니다.

(11時50分 散會)

○出席委員

7名

羅在岩

丁昌熙

玄壽漢

朴禹信

林臥龍

金憲中

孫光一

○出席專門委員

蔣昭秀

○關係公務員

財務局長

吳炳漢

市民奉仕室長

黃義振

稅務1課長

尹煥老

